

합법적으로 소득세 덜 내는 비법

공동사업으로 소득세 SALE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소득을 둘로 쪼개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배우자나 형제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비법을 알아본다.

진행_정슬이 기자·사진_주현진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형제 등 특수 관계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주 소득자의 소득에 합하게 되어 있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 2004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 관계자도 각각의 지분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됐다. 새로 바뀐 공동사업자 대상 소득세법이 적용되면 동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단독 개업시보다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New 공동사업자 세금 내는 법

올해부터 배우자나 형제 등 특수 관계자와 동업하는 경우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로서 소득을 나눠 세금을 계산하면 단독 개업시보다 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동업으로 운영하는 제과점을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의 소득금액을 나눈다. 각 동업자는 배분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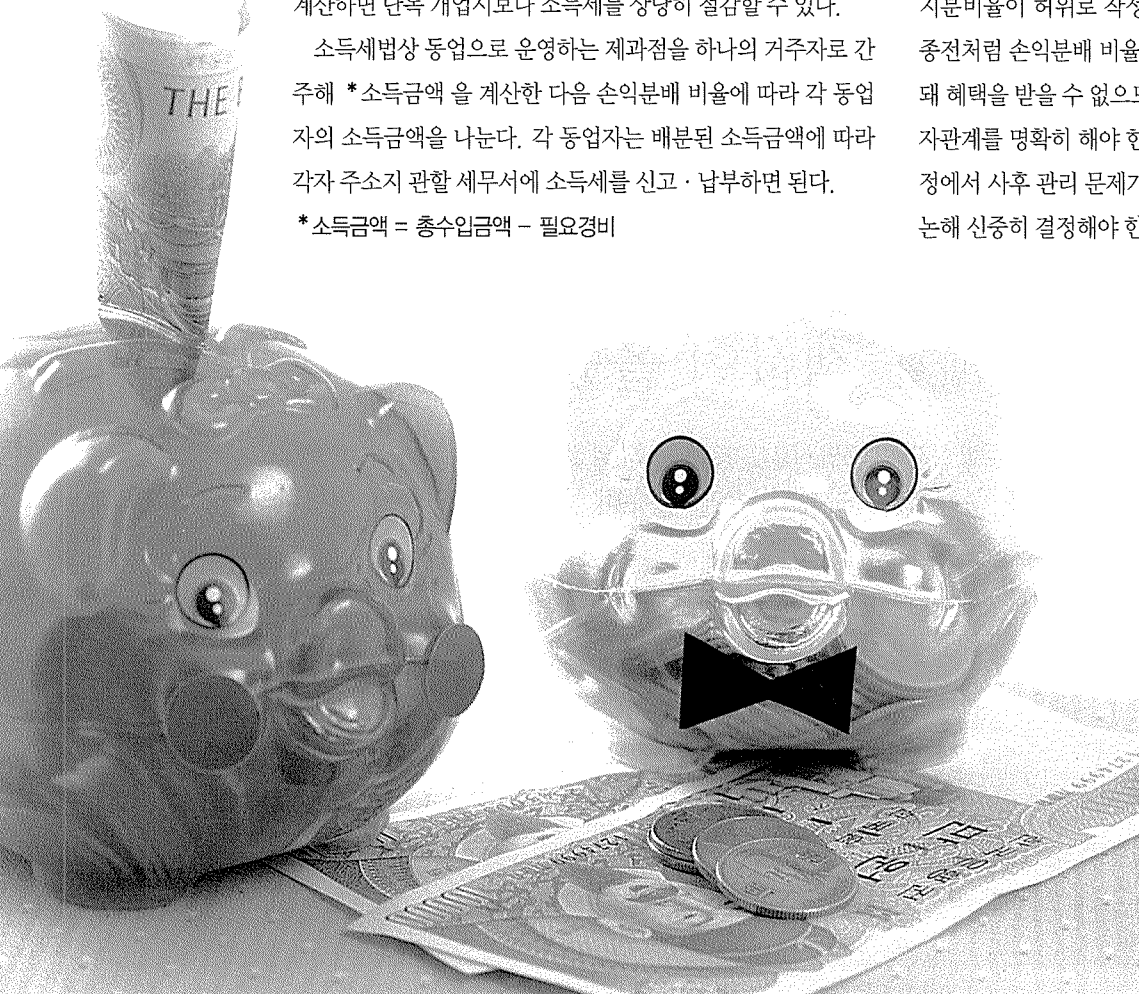
공동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 동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동업자 지분비율, 출자금액
- ▷ 동업자 간 의사 결정 방법
- ▷ 제과업 공동 운영 시 필요한 규정들
- ▷ 작성일, 동업자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공동사업 창업할 때 주의할 점

지분비율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탈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처럼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동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출자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제과점을 경영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사후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업자와 충분히 의논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Advice
정동현

〈정동현세무사사무소〉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지(전국부동산뉴스)와 치과정보지 〈덴포라인〉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